

# 2025년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사업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2차 추가 모집 공고

광주 북구 지역 내 4차 산업(AI, AR/VR, 드론, 3D프린팅 등) 전문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 대상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2차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7월 14일

(재)광주테크노파크원장

1

##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광주 북구 지역 내 4차 산업 전문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·기획·사업화 지원
- 지원대상 :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
- 지원규모 및 기간
  - (지원규모) 총 10,000천원
  -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'25. 11. 7.까지
- 지원내용 및 방법
  - (지원내용) **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**

구 분		지원수(건)	지원내용	지원예산
사업화	시제품 제작	2	- 사업화 지원 제품 설계 및 목업 제작 지원(설계, 제작, 디자인 등)	최대 5,000천원/건

- (지원방법) **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공급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**

## □ 지원절차 및 일정

구 분	주요내용	일 정
2차 추가 모집 공고 및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TP) 법인 홈페이지 모집 공고 게재</li> <li>• (지원희망기업) 지원신청서 제출</li> </ul>	'25. 7. 14. ~ 7. 28.
↓		
예비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의 중복성 검토</li> <li>•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 검토</li> <li>※ 유의사항 및 [별표 1] 참조</li> </ul>	~'25. 7. 30.
↓		
선정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평가위원회 개최</li> <li>• 사업수행역량, 사업화계획,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</li> </ul>	'25. 8. 1.
↓		
선정결과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2일 이내 결과통보 (E-mail/유선 통보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</li> </ul>	'25. 8. 4.
↓		
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3자 협약)광주테크노파크 - 수혜기업 - 공급기업</li> </ul>	'25. 8. 8.
↓		
중간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간점검(모니터링)을 통한 계획 대비 과제 수행현황 파악</li> </ul>	'25. 10월 초
↓		
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를 위한 최종 검토위원회</li> </ul>	~'25. 11. 7.
↓		
사업비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</li> </ul>	'25. 11월 중

※ 상기 일정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## 2

### 평가방법

□ 평가내용: 사업수행역량, 사업화계획, 기대효과

□ 평가방법

- (서류검토)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(예비진단 병행)
- (선정평가)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서면평가(필요 시 대면평가 진행)

□ 선정기준 :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경우, '지원 대상' 으로 분류하고,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'최종 지원 대상' 으로 선정 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'기대효과' 높은 과제 우선 선정

□ 평가항목

구 분	평 가 항 목	배 점
사업수행역량 (35)	● 개발된 제품의 최종산물의 사업목표 수립의 적절성	20
	●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	15
사업화계획 (35)	● 타R&D 수행완료 후, 1년 미만 미생산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	20
	●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목표의 타당성	15
기대효과 (30)	● 고용 및 매출증대 가능성	20
	● 국내·외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	10

## 3

### 접수방법

□ 공고기간 : 25. 7. 14.(월) ~ 25. 7. 28.(월)

□ 접수기간 : 25. 7. 14.(월) ~ 25. 7. 28.(월) 18시까지

□ 접수방법 : E-mail 접수(날인 원본 및 스캔본)

방문 또는 우편 접수(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)

□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

※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[(재)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([www.gjtp.or.kr](http://www.gjtp.or.kr))  
- 정보마당 - 지원사업공고] 다운로드

※ 지원 신청서 내 제출서류 목록 참고

□ (접수 및 문의처)

지원기관	담당자	전화	이메일	주소
(재)광주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모빌리티센터	강흥구 선임	062-602-0204	hgkang @gjtp.or.kr	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,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305호

## 4

### 유의사항

□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
□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·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 불가

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)

□ 제출 지원신청서 외 별도 평가자료(PPT 등)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 
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 요망

□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 
작성 요망 : 사업화지원의 경우 지원금액의 10% 이상, 부가가치세 전액  
기업 부담

□ 수혜기업은 향후 5년간 광주광역시, 광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 
(매출, 신규고용 등) 제출,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 ‘실패’  
판정 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□ 수혜기업은 사업수행연도 동안 광주 북구 소재지에서 사업자를 유지해야 함

- 법인전환, M&A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연도 동안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음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  -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
  -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
  - 기업지원사업 수행 결과 “실패” 또는 이에 준하는 “미흡” 판정 기업
  -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
  - ※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으로 함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“사전지원제외” (평가 제외)
  - [별표 1] 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  -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 -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[별표 1]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(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)

구 분	사 전 지 원 제 외	사 후 관 리
검토 기준	<p>1. 기업의 부도</p> <p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3. 「민사집행법」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p> <p>5.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p> <p>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</p>	<p>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대상으로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% 이상</li> <li>2.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% 이하</li> <li>3. 부분자본잠식</li> <li>4.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.0배 미만</li> <li>5.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</li> <li>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"한정"</li> </ol>

	<p>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</p> <p>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</p> <p>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p> <p>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</p> <p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p>	
<p>조치</p>	<p>○ 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의 경우 "사전지원제외 대상"으로 처리</p>	<p>○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"사후관리대상"에 해당됨을 보고</p> <p>○ 연구개발기관이 "사후관리대상"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,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</p> <p>- 진도점검 등 결과 "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"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</p>